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필수서류	신분증사본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 이후 발급여권제외) 등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	본인	아파트 계약용(본인발급),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가능
	인감도장	본인	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(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)
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관계, 발생일, 변동사유 등 "모든정보표시"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유, 세대주 및 관계 등 "모든정보표시"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발급
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발급
	출입국사실증명	본인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거주사실 확인,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
	배점기준표	-	[양식] 접수장소 비치
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관계, 발생일, 변동사유 등 "모든정보표시"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입증받기 위한 경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세대 구성에 포함하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발급)
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	직계비속	만18세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 발급)
	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발급)
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만 인정,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)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-	[양식] 접수장소 비치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복무확인서	본인	10년이상 /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
위임시 추가서류 (본인 외 모두해당)	위임장	-	[양식] 접수장소 비치 (당첨자의 인감도장을 날인)
	인감증명서	본인 (당첨자)	용도: 아파트 계약 위임용(본인발급에 한함, 대리발급분 불가)
	신분증	대리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대리인 본인 확인용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
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	부적격소명서류	-	부적격 사유에 따라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

※ 본 안내문에 반영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,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3.08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

※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,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※ 상기 서류는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,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함. 또한 주민등록표등(초)본에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,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함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_ 배점기준표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계	100			
미성년 자녀수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영유아 자녀수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세대구성(3)	5	3세대 이상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	한부모 가족	5	
무주택기간(4)	20	10년 이상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해당 시도 거주기간(5)	15	10년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시,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,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,경기,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,도로 본다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저축가입기간(6)	5	10년 이상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

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를 적용

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
※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